



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기한 60일 → 30일 단축

* 시행일 2020. 2. 21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 개정으로

◆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기한 단축

- 국민과 기업이 제때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고,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책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 계약 체결 시 신고 기한을 **계약체결일로부터 “60일에서 30일”** 이내로 단축함.
-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(최대 300만원 이하)

◆ 부동산거래 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

-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,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**거래계약이 해제, 무효,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신고**하도록 함.
- 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(최대 300만원 이하)

◆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

-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, 이를 강력하게 단속, 처벌 할 수 있는 과태료(최대 3,000만원) 부과 규정을 마련함.

◆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

- 업·다운계약,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(시·군·구)으로 조사하여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 마련.

〈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〉

- 신고 대상 :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
- 신고 기한 :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→ 30일
- 신고의무자 : 거래당사자(매수인, 매수인), 중개거래 시 개업공인중개사
- 신고 방법 : 방문(종합민원과 5번창구) 또는 인터넷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

문의처 고창군청 종합민원과

전화 063-560-2422 팩스 063-560-2409